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장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 : 김태수 의원 발의
- 나. 의안번호 : 제477호
- 다. 발의일자 : 2019. 3. 18
- 라. 회부일자 : 2019. 3. 21

2. 제 안 사 유

-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의 전기 사용량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시민주도의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하고, 중소기업 및 사업장 내에서의 서울시 에너지정책 홍보를 통해 서울시 원전 하나줄이기 정책에 기여하고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나. 에너지컨설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에너지절약 모범중소사업장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
라. 시민에너지점검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련 법령 :

나. 예산 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장의 전기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시민주도의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사업 추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

나. 구성 체계

- 본 제정조례안은 총 10개(제1조~제10조)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구체적으로 제2조는 조례안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장의 범위(정의)에 관한 사항, 제3조는 시민주도의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제4조는 중소기업장의 에너지컨설팅 및 지원에 관한 사항, 제5조는 에너지절약 모범 중소기업장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,

제6조는 에너지절약 지침서 및 홍보물 제작·배포에 관한 사항, 제7조는 시민에너지점검반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제8조는 중소기업장의 효율적인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, 제9조는 중소기업장의 에너지절약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·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다. 검토의견

- 1) 중소기업장 에너지컨설팅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- 중소기업인의 에너지컨설팅과 캠페인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에너지 저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2012년부터 「에너지절약모범 발굴 지원 사업¹⁾」을 추진해 오고 있음.

2019년도의 경우 서울시 소재 신규사업장 1,000개소, 2018년도 전력 사용량이 증가한 사업장 500개소 등 중소기업장 1,500개소를 대상으로 전년도 대비 여름철 전기사용량 절감(5% 이상) 유도, 월별 참여사업장(점포)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및 증감 요인분석, 서울시 에너지 지원정책 홍보 및 에코마일리지 가입 유도 등 에너지컨설팅과 에너지절감 제품²⁾을 지원하고 있음.

- 이와 같이 에너지컨설팅 등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장을 지원하는 것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항 및 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2항제8호에 부합하는 것임.
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
 제6조(소상공인지원계획)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8. 그 밖의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2) 에너지절약 모범 중소기업장 인증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- 2012년 이후 전년 여름철(6~8월) 대비 전력사용량을 5% 이상 절감한

1) '19년도 예산은 1억 6천4백만원 편성

2) 멀티탭(전원차단기능), LED전구,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등

4)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- 비영리법인,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단체를 선정하고 있으며, 운영단체는 에너지절약 모범사업장 모집, 시민에너지점검반 운영 및 에너지컨설팅 활동, 성과분석 및 최종 사업결과 제출, 성과발표회 개최 등의 세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.

〈최근 2년간 운영단체 현황〉

구 분	2018년	2019년
운영단	서울에너지닥터, 에코허브	서울에너지닥터, 에코허브

- 그리고 사업 수행 운영단체(민간단체) 등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「에너지법」 제18조 및 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제2항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 등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.

「에너지법」

제18조(민간활동의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에 관련된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10(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)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5) 종합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현행 「에너지절약모범 발굴 지원」 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중소기업의 에너지컨설팅 및 지원, 에너지절약 모범중소사업장 인증,

시민에너지점검반 운영, 사업수행 민간단체 지원 사항 등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사업장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